

스포츠기본법 시행령안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스포츠기본법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스포츠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법 제8조제2항제14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스포츠가치 확산 활동의 육성·지원 등에 관한 사항
2. 여성·노인·유아·아동·청소년 등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 및 진흥에 관한 사항
3. 민속스포츠 발굴·육성·전승 등에 관한 사항
4. 스포츠유산·유물의 전시 및 교육·홍보에 관한 사항
5. 스포츠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지역 간 스포츠격차 해소를 위한 사항
6. 스포츠협동조합 및 스포츠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
7. 국제 스포츠행사 유치·개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
8. 남북 체육교류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
9. 그 밖에 스포츠참여 소외계층 해소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

사”라 한다)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스포츠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④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·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⑥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·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역스포츠진흥을 위한 시행계획(이하 “시·군·구 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⑦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시·군·구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시·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⑧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도 시행계획 및 시·군·구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스포츠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제3조(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구성 등)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(이하 “정책위원회”라 한다)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

되며,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, 교육부장관, 외교부장관, 통일부장관, 법무부장관, 국방부장관, 행정안전부장관, 문화체육관광부장관, 보건복지부장관, 환경부장관, 여성가족부장관, 국토교통부장관, 해양수산부장관, 중소벤처기업부장관, 국무조정실장, 국가인권위원장으로 한다.

②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책위원회 구성원이 아닌 관련 부처의 장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건과 관련된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정책위원회의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.

④ 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조정한다.

1. 국민의 스포츠권 보장과 스포츠 관련 주요 시책의 평가·점검
- 2 스포츠진흥계획의 수립·조정
3. 국제경기대회 개최와 관련된 주요 정책의 수립·조정 등
4. 그 밖에 스포츠 정책과 관련하여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⑤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하며,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, 기획재정부장관, 교육부장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정책위원회 위원장과 직무 대행자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위원이 정책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⑦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·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.

⑧ 정책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. 이 경우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

제4조(차관조정회의) ① 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정책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책위원회에서 심의·의결전에 차관조정회의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.

② 차관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·조정한다.

1. 정책위원회의 상정 안건과 관련하여 정책위원회가 위임한 사항
2. 그 밖에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관련 부처 간에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차관조정회의 의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되며, 구성원은 해당 안건과 관련된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이 된다.

제5조(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 구성 등)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

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(이하 “실무위원회”라 한다)의 위원은 기획재정부, 교육부, 외교부, 통일부, 법무부, 국방부, 행정안전부, 문화체육관광부, 보건복지부, 환경부, 국토교통부, 해양수산부 및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으로 한다.

② 실무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.

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3조제5항·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정책위원회”는 “실무위원회”로 본다.

제6조(정책위원회 등의 운영) ① 정책위원회와 실무위원회는 안전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정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책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.

제7조(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)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스포츠의 날과 스포츠 주간이 속하는 달에는 학교에서는 운동회 또는 스포츠대회와 그 밖의 스포츠행사를 하고, 직장에서는 그 실정에 맞는 스포츠행사를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 주간에는 그 실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스포츠 관련 행사를 할 수 있다.

1. 운동경기와 생활스포츠행사
2. 씨름과 그네 등 전통무예 및 민속스포츠행사
3. 레크리에이션활동
4. 스포츠에 관한 전시회와 강연회 등
5. 그 밖에 스포츠 진흥에 관한 행사

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스포츠 관련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

개정한다.

제5조를 삭제한다.

②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, 제5조의2, 제6조, 제6조의2, 제7조를 삭제한다.